

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

의안 번호	4342
----------	------

2025. 10. 17.
총무위원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9. 30. 송재천 의원

나. 회부 일자: 2025. 9. 30. 회부

다. 상정 일자: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(2025. 10. 17.) 상정,
“수정의결”

2. 제안 요지

가. 제안 이유

- 광양시 관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와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~제4조)
- 수상레저활동 안전 준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협력기구 설치와 운영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~제8조)
- 위탁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~제10조)

3. 검토 의견

-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수상레저안전법」에 근거하여,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본칙 총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본칙에는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, 시장의 책무와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, 수상레저활동 안전 준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, 수상레저 안전 감시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, 협력기구 설치와 운영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, 위탁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0조)을,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였음.
-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내용이나 조문 체계 및 형식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시민 안전 및 레저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회의록 참조.

5. 심사 결과: **수정의결**(출석위원 6명)

※ 수정 이유 및 내용은 수정안 참고

6. 소수의견의 요지: 해당 없음.

- 붙임 1.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2.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4342-1
----------	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10. 17.

제안자 : 총무위원장

1. 수정 이유

- 행정 강제 등 의무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적 효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함.

2. 수정 내용

- 안 제3조 중 “수립·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를 “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”로 수정함.

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중 “수립·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를 “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시장의 책무) 광양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<u>수립·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	제3조(시장의 책무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</u>

(제정안+수정안)

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상레저활동”이란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수상(水上)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·오락·체육·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.
2. “수상레저기구”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광양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) 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추진계획
2.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
3. 수상레저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
4.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)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상레저 안전감시원) 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수상레저 안전감시원(이하 “안전감시원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② 그 밖에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7조(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기구를 둘 수 있다.

② 협력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대책
2.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협력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

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, 수상레저 전문가, 관련 단체 추천 인사, 시민 대표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협력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·주재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기구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(사업 등) 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
2. 수상레저 관련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업
3. 수상레저 관련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
4. 수상레저 관련 조사·연구·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
5.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수상레저 관련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.

제9조(위탁)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(교육 및 홍보) ① 시장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